

大田廣域市文化藝術振興基金造成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

議案 番號	546
----------	-----

提案年月日：1995年2月22日

提案者：地方自治特委委員長

1. 提案理由

- 各種 基金의 積立目的은 利子收入에 의한 基金의 極大化에 있다고 보는바, 金融商品이 多樣해진 現實을 勘案하여 基金 積立에 대한 選擇의 幅을 넓힐 수 있도록 金融機關으로 擴大함.

2. 主要骨子

- 基金運用의 極大化를 위하여 現行 最高利率로 “銀行”에 長期預置토록 한 것을 “金融機關”으로 變更함.(案 第8條 第2項)

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2항중 “은행에” 를 “금융기관에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재5조 (기금의 관리) ① (생략)</p> <p>② 적립기금은 최고이율로 <u>은행에</u>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.</p>	<p>재5조 (기금의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금융기관에</u> ----- -----</p>